

2024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I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 고
전기 (3월 입학)	원서접수	2024. 1. 3.(수) ~ 1. 6.(토)	
	면접고사	2024. 1. 9.(화) ~ 2. 1.(목) 중 2일	
	합격자 발표	2024. 2. 6.(화) 까지	
	합격자 등록	2024. 2. 7.(수) ~ 2. 13.(화)	
후기 (9월 입학)	원서접수	2024. 6 ~ 8월 중 실시 예정	2024년도 한국어능력시험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24년 6-8월 중 실시예정
	면접고사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I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대학	모집단위명	모집인원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 교육과정 이수자	
인문대학 (3)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인문콘텐츠학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	학과별 약간명	
사회과학 대학(5)	법·경찰학부, 행정·언론미디어학부, 지적학과, 사회복지학과, 관광학과			
생명·의과학 대학(3)	식품제약공학부, 원예산림학부, 수산생명의학과			
공과대학 (9)	반도체공학과, 기계조선해양공학부, 전기공학과, 인공지능공학과, 컴퓨터학부, 건축·토목·환경공학부, 도시계획및조경학부, 건축학과(5년제), 에너지화학공학과			
경영대학 (2)	경영학부, 경제무역학부			
생활과학 예술체육 대학(6)	아동학과, 식품영양학과, 패션의류학과, 음악공연기획과, 아트앤디자인학부, 체육학과			
미래라이프 대학(6)	레저스포츠지도학과, 상담심리치료학과, 국제차문화학과, 회계세무학과, 스마트에너지학과, 스마트조선시스템학과			
총장직속(1)	글로벌학부			
계	35개 학과(부)	1,294명	총 입학정원의 2% 이내	-

※ 지원자는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함

※ 간호학과, 사범대학, 약학과 및 자율전공학부는 모집대상에서 제외함

※ 건축학과는 수업연한이 5년임

Ⅲ

지원자격

1. 법령 구분에 따른 지원자격

구분	법령 구분	세부 지원자격
입학정원 2% (모집단위별 10%) 이내 모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 (제2호)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제외) -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자 · 국외 재학기간: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 (제6호)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 - (제7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및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이하 전 교육과정 이수자)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입학정원의 2% 이내)

1) 재외국민

-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예정)한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구분	지원 자격	비고
국외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국외체류기간	· 학생: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가) 국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나) 국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다) 국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 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 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라) 국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 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 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2) 외국인

○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예정)한 자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구분	지원 자격	비고
외국인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에서 고교 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외국인	복수국적자 제외

○ 외국인 어학능력 최소 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어학자격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2과정 이상 이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예체능 계열 지원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1과정 이상 이수자 ▪ 정부초청 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의 경우 자격 요건을 별도로 심사함 ▪ 모든 시험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시험성적만 인정함
--

3. 정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예정)한 자 중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구분	지원 자격	비고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	복수국적자 제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 한 재외국민, 외국인, 결혼이주민(「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 외국인 어학능력 최소 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어학자격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2과정 이상 이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예체능 계열 지원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1과정 이상 이수자 ▪ 정부초청 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의 경우 자격 요건을 별도로 심사함 ▪ 모든 시험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시험성적만 인정함
--

IV

전형방법 및 합격자 선발방법

가. 전형방법 : 면접고사 100%

나. 전형요소별 배점 및 비율

구분	모집단위	면접고사	비 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	모든 모집단위	100%(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능력 40점 ▪ 전공소양 30점 ▪ 인·적성 15점 ▪ 사고력 15점

※ 3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반영함

다. 합격자 선발방법

- 1) 모집단위별 전형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입학정원 2% 이내 모집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해당)
- 2) 지원자격 미달자는 전형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처리
- 3) 해외거주 외국인은 전화면접 시 화상통화를 통한 본인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만 면접고사 응시 가능
 - 화상통화를 통한 본인확인 불가능시 지원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
- 4) 면접고사 대상자가 면접고사에 결시하거나 면접고사 만점의 6할 미만자는 불합격 처리
- 5) 모든 성적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반영
- 6) 예비순위자는 선발하지 아니함
- 7) 미등록으로 결원이 발생 시 추가 충원하지 아니함

구분	제출 서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1. 우리 대학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2.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4.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학생) 6.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7.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부모, 학생) 8. 여권 사본(부모, 학생) 9.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 학생) 10.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국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1.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 12.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3. 자영업자의 국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북한이탈주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1. 우리 대학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2.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3.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학력확인서 또는 학력인정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1. 우리 대학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2.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3.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5. 외국국적 증명서(부모, 학생의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사본)
전 교육과정 이수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1. 우리 대학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2.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4.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5. 출입국사실증명서 6.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7. 신분증 사본